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성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054 발의연월일: 2025. 3. 18.

발 의 자:이성권·최은석·곽규택

주진우 • 안상훈 • 조은희

김종양 • 조승화 • 김용태

신성범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채용 등 채용비리가 확인되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 고 있음.

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수시로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의 감사 등을 통하여 채용비리가 밝혀지고 이에 대한 처벌 및 제도개선이 이루어지 고 있으나,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이 불가하며, 국회의 국정감사 등을 통한 외부적 통제도 한계가 있음.

이에, 외부적 통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채용비리의 방지 등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정 활동과 그 공개에관한 사항 등을 새로 규정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채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·감독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 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(안 제15조의3제3항 신설).
- 나.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친족이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,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(안 제15조의3제4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3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채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·감독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
- ④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「민법」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,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 원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 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15條의3(公務員의 採用등) ①・	第15條의3(公務員의 採用등) ①・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
	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
	원 채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지
	도·감독하여야 하며, 그 결과
	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
	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
	<u>한다.</u>
<u> <신 설></u>	④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
	원은 「민법」 제777조에 따른
	친족이 선거관리위원회 소속
	공무원으로 채용된 때에는 지
	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
	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, 중
	<u>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인</u>
	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
	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